

●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11-31호

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전자파 보호 시험방법(전파연구소공고 제2010-6호, 2010.12.24.)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.

2011년 12월 23일

국립전파연구원장

전자파 보호 시험방법중 개정공고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시험방법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(이하 “고시”라 한다)에 의하여 전자파 보호 시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시험방법은 고시 제3조 규정에 의한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의 전자파 보호 시험방법(이하 “내성시험”이라 한다)에 적용한다.

제2장 세부시험방법

제3조 (일반사항) 일반사항에 대한 세부시험방법은 다음 각 항과 같다.

- ①정전기 방전 내성시험은 별표 1-1의 KN 61000-4-2를 적용한다.
- ②방사성 RF 전자기장 내성시험은 별표 1-2의 KN 61000-4-3을 적용한다.
- ③전기적 빠른 과도현상/버스트 내성시험은 별표 1-3의 KN 61000-4-4를 적용한다.
- ④서지 내성시험은 별표 1-4의 KN 61000-4-5를 적용한다.
- ⑤전도성 RF 전자기장 내성시험은 별표 1-5의 KN 61000-4-6을 적용한다.
- ⑥전원주파수 자기장 내성시험은 별표 1-6의 KN 61000-4-8을 적용한다.
- ⑦전압강하 및 순시정전 내성시험은 별표 1-7의 KN 61000-4-11을 적용한다.

제4조 (대상기기별) 대상기기별에 대한 세부시험방법은 다음 각 항과 같다.

- ①방송수신기 및 관련기기류에 대한 내성시험은 별표 3의 KN 20을 적용한다.
- ②자동차 및 내연기관 구동기기류 등에 대한 내성시험은 별표 6의 KN 41을 적용한다.
- ③전기철도기기류에 대한 내성시험은 별표 7의 KN 51을 적용한다.
- ④정보기기류에 대한 내성시험은 별표 5의 KN 24를 적용한다.
- ⑤의료기기에 대한 내성시험은 별표 2의 KN 60601-1-2를 적용한다.
- ⑥무선설비기기류의 내성시험
 - 1. 무선설비기기류의 공통 내성시험은 별표 8-1의 KN 301 489-1을 적용한다.
 - 2. 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 및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에 대한

- 내성시험은 별표 8-2의 KN 301 489-7을 적용한다.
3.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의 내성시험은 별표 8-3의 KN 301 489-17을 적용한다.
 4.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에 대한 내성시험은 별표 8-4의 KN 301 489-24를 적용한다.
 5. 디지털코드없는 전화기에 대한 내성시험은 별표 8-5의 KN 301 489-6을 적용한다.
 6. 생활무선기에 대한 내성시험은 별표 8-6의 KN 301 489-13을 적용한다.
 7. 간이무선국에 대한 내성시험은 별표 8-7의 KN 301 489-5를 적용한다.
 8. 특정소출력무선기기에 대한 내성시험은 별표 8-8의 KN 301 489-3을 적용한다.
 9. 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에 대한 내성시험은 별표 8-9의 KN 301 489-9를 적용한다.
 10. 이동전화용, 개인휴대전화용, 이동통신용 기지국, 무선중계기, 보조기기에 대한 내성시험은 별표 8-10의 KN 301 489-26을 적용한다.
 11. 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에 대한 내성시험은 별표 8-11의 KN 301 489-18을 적용한다.
 12.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 내성시험은 별표 8-12의 KN 301 489-15를 적용한다.
 13. 무선휘출용 무선설비에 대한 내성시험은 별표 8-13의 KN 301 489-2를 적용한다.
 14. 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에 대한 내성시험은 별표 8-14의 KN 301

489-27을 적용한다.

15. 지반 탐사 및 벽면 탐사 레이더에 대한 내성시험은 별표 8-15의 KN 301 489-32를 적용한다.

16. 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 내성시험은 별표 8-16의 KN 301 489-20을 적용한다.

17. 해상항해용 무선설비 내성시험은 별표 8-17의 KN 60945를 적용한다.

⑦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에 대한 내성시험은 별표 4의 KN 14-2를 적용한다.

부 칙<제2008-4호, 2008.5.21.>

제1조(시행일)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내성시험에 대한 시험장비 설치방법의 예외사항 및 시험방법 적용시기는 다음 각 항과 같다.

①2006년 1월 이후에 시행된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내성시험(전파연구소 고시 제2004-31호의 KN 61000-4-4)에서 제7장 시험설치 중 시험실 형태 시험에 대한 일반적 시험장비 설치방법은 2007. 9. 30일까지 혼용하여 적용한다.

②제4조(대상기기별)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무선설비기기류의 내성시험은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·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시기를 적용한다.

부 칙<제2008-58호, 2008.12.16.>

제1조(시행일)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제2009-10호, 2009.12.21>

제1조(시행일) 이 공고는 전자파보호 기준이 개정 고시되어 부칙에서 정하는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제2010-6호, 2010.12.24>

제1조(시행일) 이 공고는 전자파 보호 기준이 개정 고시되어 부칙에서 정하는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전파연구소고시 제2011-8호, 2011.1.24>

제2조(다른 고시와의 관계시행일) ①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고시 및 공고에서 「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·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」, 「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에 관한 고시」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

정에 같음하여 이 규정 또는 이 규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<제2011-31호, 2011.12.23>

제1조(시행일) ①이 공고는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제2항 관련 별표 6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